[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소득공제 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Payroll No: Account No: Duty Phone: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

관계코드 / 내외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기본공제 /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 경로우대	자녀양육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명	국세청자료	-	-	-						
		그 밖의 자료									
0		국세청자료	○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특별공제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 밖의 공제	연금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출자공제	'02. 1. 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합니다.

특별공제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 1 ~ 당년 11. 30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2006. 1. 1지출 분부터 공제합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합니다)을 기입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입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입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합니다.
주택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1.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입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합니다. 1.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2.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기부금)×30% 3.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 입니다.		
투자조합출자 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 이후 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전년도 12. 1부터 당년도 11. 30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공제액 = ① × 1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때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입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